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

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11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.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적공사비제도 개선을 협회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국회, 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정부가 받아들여 개정된 것이다.[편집자 주]



1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25679호) 개정 주요 내용

- 공포일 : 2014. 11. 4, 시행일 : 2014. 11. 4.
-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시장단가제도 도입(제9조제1항제3호)
 - 공사 예정가격 결정 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제도는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하여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폐지하고, 표준시장단가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여 입찰 등에서 계약금액 결정 기준으로 사용토록 함
- 과징금 부과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정비(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)
 -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

<p>제89조(설계비 보상)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.</p> <p>1. 2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〈신설〉</p>	<p>제89조(설계비 보상) ① _____ _____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 _____.</p> <p>1. 2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7조(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)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.</p> <p>1.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</p> <p>2.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</p>
--	--

II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기획재정부령 제443호] 개정 주요 내용

- 공포일 : 2014. 11. 4, 시행일 : 2014. 11. 4.
-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 구체화(제5조제2항)
 - 표준시장단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계약단가 외에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도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
- 통일된 계약업무 집행을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정비(제70조제1항)
 -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업무 집행에 혼란이 발생하여, 국가계약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계약업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

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) ① (생략)</p> <p>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,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</p>	<p>제5조(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_____종류별 계약단가, 입찰단가와 시공단가를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_____.</p>

<p>제70조(하자담보책임기간)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70조(하자담보책임기간) ①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, —————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 ————— 공사의 종류를 —————.</p> <p>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(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):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0조 및 [별표 4]에 따른 기간</p> <p>2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(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): 1년</p> <p>3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공사: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, [별표 6] 및 [별표 7]에 따른 기간</p> <p>4. 「전기공사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: 「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」 제11조의2 및 [별표 3의2]에 따른 기간</p> <p>5. 「정보통신공사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: 「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」 제37조에 따른 기간</p> <p>6. 「소방시설공사사업법」에 따른 소방시설공사: 「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」 제6조에 따른 기간</p> <p>7.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: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 및 [별표 9]에 따른 기간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2조(하자보수보증금률) ① (생 략)</p> <p>②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단순임반절취공사, 모래·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72조(하자보수보증금률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 성질상 객관적으로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 아니한 —————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5조(지체상금률)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물품의 제조·구매(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): 1000분의 1.5 〈단서 신설〉</p> <p>3. ~ 5. (생 략)</p>	<p>제75조(지체상금률) ————— 제74조제1항에 따른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—————</p> <p>—————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: 1000분의 1.5. 다만,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,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·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1로 한다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